

국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커 기홀이는 금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12. 1.(수) 10:00

제232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2022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행정문화국 문화체육과]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2022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157호
-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1. 11. 10.
- 라. 회부일자 : 2021. 11. 10.

2. 제안이유

재단법인 금천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1)(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출연 대상 : 재단법인 금천문화재단
- 나. 출연 필요성

- 1) 금천구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한
금천문화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 지원

-
- 1)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2) 구에서 위탁하는 대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 지원
 - 3)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정책 개발 및 특색 있는 문화예술 공연, 지역축제 등의 발굴로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증진에 기여
- ▶ 출연에 대한 구의회 동의 후, 2022 회계연도 사업예산(안) 심의·의결

다. 2022년 예산액

- 1) 문화재단 총 예산액 : 7,521,309천원
- 2) 출연금 요구액 : 6,989,256천원

※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백만원)

해당년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출연금	1,737	4,355	4,839	5,259	6,202	6,989	2017.7.1. 문화재단 설립

4. 참고사항

가. 출연금 편성내역, 지출예산총괄(부서별)

나. 관계법령

- 1)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운영재원)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2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에 대해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 임.
- 2022년도 금천문화재단 총 예산액은 7,521백만원으로 재원은 출연금 6,989백만원, 2020년 잉여금 508백만원, 관리사업수익 및 이자수익 23백만원임
- 출연금은 전년대비 13.6%인 786,265천원이 증가한 6,989,256천원이며 주요 증액 사유는 정부정책 및 지침에 따른 자연증감분 281,437천원, 금천문화예술단체 커뮤니티공간 등 신규사업 274,656천원, 예술진흥사업비 196,953천원 등이 증가 됨.
- 매년 출연금이 증가하는 것은 구의 위탁사업 및 자연증가분 발생 등 변화하는 문화환경에 따라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하나 2022년도 출연금 6,989백만원은 2017년7월1일 금천문화재단 설립 후 첫 해인 2018년 출연금 4,355백만원에 비해 60.4%가 증가하였음.
- 문화재단 설립 취지는 공모사업 등의 정부 문화예술 지원이 공공 법인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문화재단 네트워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등 문화예술 정책의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고 문화정책의 지역분권화에 대비하기 위함
- 아울러 문화예술계의 전문성 반영으로 공익성과 효율성을 동시

에 추구하고 재정운영면에서도 민간으로부터의 기부, 후원, 협찬 등의 적극적인 재원 조성이 가능하며 보다 자유로운 수익사업으로 문화예술사업에 재투자를 창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바

- 문화재단 출연에는 법률에 저촉됨이 없어 적법하나 문화재단의 설립취지 및 장점에 부합되는 적극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 1) 출연금 편성내역 1부.

2) 지출예산 총괄(사업별) 1부.

3) 관계법령 1부.

<붙임1>

과목별 편성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22년	2021년	증 감	비 고
계	7,521,309	6,558,917	962,392	
인건비 소계	2,435,120	2,311,381	123,739	
보수	2,325,181	2,205,933	119,248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9,939	105,448	4,491	
평가급	298,353	254,754	43,599	
퇴 직 급 여	232,832	210,994	21,838	
지역문화 진흥 사업비	609,091	404,435	204,656	
예술 진흥 사업비	1,195,654	938,701	256,953	
대외 협력 사업비	176,514	95,514	81,000	
독서문화 진흥 사업비	1,554,624	1,407,616	147,008	
일반운영비 소계	1,019,121	935,522	83,599	
사무관리비	132,367	146,771	△14,404	
공공운영비	39,140	32,780	6,360	
수선유지비	23,246	28,184	△4,938	
국내여비	181,440	156,240	25,200	
위탁관리비	1,200	-	1,200	
행사운영비	5,000	5,000	-	
사업업무추진비	6,600	6,600	-	
정원가산업무비	5,840	5,120	720	
부서업무비	4,500	4,500	-	
교육훈련비	12,683	12,683	-	
기타복리후생비	259,000	225,681	33,319	
사회보험부담금	314,505	280,763	33,742	
포상금	4,800	4,800	-	
직급보조비	28,800	26,400	2,400	

<붙임2>

팀별(사업별) 지출예산 총괄

(단위 : 천원)

연번	팀 명	2022년	2021년	비교증감	비고
합	계	7,521,309	6,558,917	962,392	
001	경영 지원팀	3,985,426	3,712,651	272,775	인건비 167,338천원 증액 퇴직급여충당금 21,838천원 증액 사회보험 33,742천원 증액 복지포인트 특근매식비 등 33,319천원 증액 국내여비 25,200천원 증액
002	문화 사업팀	609,091	404,435	204,656	문화사업팀 운영경비 (-)2,000감액 하모니축제 (-)15,000천원 감액 금천마을활력소 어울샘 32,340천원 증액 금천우리동네오케스트라 20,000천원 증액 금천문화예술단체 커뮤니티공간(구시책사업)164,616천원 증액 금천아트테라피 7,700천원 증액 지역특성화 문화예술사업(-)3,000천원 감액
003	예술 진흥팀	1,195,654	938,701	256,953	운영경비 2,699천원 증액 아트홀 시설운영비 80천원 증액 금나래아트홀 공연비 140,045천원 증액 뮤지컬센터 49,129천원 증액 문화통장(예술가) 5,000천원 증액
004	도서관 운영팀	960,728	820,362	140,366	작은도서관 신규 위탁 운영비 64,393천원 증액 스마트도서관 1,2호점 유지보수관리비(설치 후 1년간 무상 유지보수 및 2년차부터 연간 유지보수 예산 편성 필요) 14,400천원 SMS이용료 11,800천원 개관연장 사업비 8,197천원 구립도서관 온라인 폰트 및 이미지 라이선스 구입 600천원 공립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업무추진비 신설 3,600천원
005	독산 도서관	181,573	180,713	860	사무용품 단가 상승 860천원
006	가산 도서관	156,691	155,951	740	사무용품 단가 상승 740천원
007	금나래 도서관	92,555	87,511	5,044	금나래특화사업 책꾸러미지원사업비 증액5000천원
008	시흥 도서관	163,077	163,079	△2	-
009	정책실	176,514	95,514	81,000	후원회 활성화 사업 증액 11,000천원 증액 금천패션영화제 사업 증액 50,000천원 증액 공공건축물 시각예술작품 전시사업 20,000천원 순증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해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운영재원)

-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 사업 수익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